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68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박상혁 · 강준현 · 진선미  
이강일 · 박민규 · 정준호  
김우영 · 김용만 · 이인영  
김한규 · 허영의원  
(11인)

제안이유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의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 법률은 흡수·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EU,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현황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일반주주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인수·합병 주체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합병기업의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

취하는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제반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안 제133조의2 신설)

의무공개매수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그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거나 해당 전환사채권 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매수등 또는 권리행사 이후 50%+1주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를 공제한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 하도록 하되,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 나. 의무공개매수의 공고 및 신고서 제출(안 제134조제1항 단서)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식의 매수등 또는 해당 주식과 관련한 권리행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해당 주식의 발행인, 의무공개매수의 목적, 해당 주식의 종류 및 수, 의무공개매수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함.

### 다.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 등의 금지(안 제140조)

의무공개매수자는 선행매수일 또는 전환사채권 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일로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라. 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안 제141조제2항 및 제3항)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의무공개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를 초과하여 응모된 경우에는 안분비례하여 매수하고, 응모한 주식수가 의무공개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두 매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마. 의무공개매수 미이행, 절차위반 등에 따른 의결권 제한 등(안 제1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선행매수를 한 자가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선행매수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음.

바. 의무공개매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등(안 제174조제2항, 제429조제2항, 제444조, 제445조 등)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의무공개매수 관련 제반 의무의 위반 시 해당 금융투자업자 및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처분, 과징금, 형사처벌을 부과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당해 매수등 직후의 보유 주식수를 말한다)를 공제한 수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매수주식수”라 한다)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공개매수(이하 “의무공개매수”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해당 주식의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을 한 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수가 가장 많은 주주가 되는 경우
2.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수가 가장 많은 주주인 자가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려는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전환사채권등”이라 한다)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매수주식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매수등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의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행매수 또는 전환사채권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이하 “선행매수등”이라 한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40조 본문 중 “공개매수공고일”을 “공개매수공고일(제13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공개매수의 경우 해당 선행매수등을 한 날을 말한다)”로, “주식등”을 “주식등(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제141조 및 제174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1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과거 매수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33조의2 또는 제134조제1항 단서·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매수한 주식(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③ 선행매수등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행매수등(제3호의 경우에는 공개매수의 철회를 말한다)을 한 다음날부터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행매수등을 한날로부터 15일 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3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를 철

회한 경우

3.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33조의2에 따라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제2항제10호 중 “제145조를”을 “제1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조에”를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33조의2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개매수를”을 “공개매수와 제133조의2제1항의 의무공개매수를”로, “항에서 같다)의”를 “항 및 제44조제2항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429조제2항제2호 중 “때”를 “때(제13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내에 공고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3조의2에 따른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44조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133조의2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매수등을 한 자

14의3. 제133조의2에 따라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45조제19호 중 “공개매수”를 “공개매수(의무공개매수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134조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별표 1 제15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5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2. 제133조제3항, 제1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

152의2.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식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공포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 대상) ①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당해 매수등 직후의 보유 주식수를 말한다)를 공제한 수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매수주식수”라 한다)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공개매수(이하 “의무공개매수”라 한다)하여야 한다.</p> <p>1.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해당 주식의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을 한 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p>

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수가 가장 많은 주주가 되는 경우

2.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수가 가장 많은 주주인 자가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려는 경우

②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전환사채권등”이라 한다)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매수주식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매수등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의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1. ~ 6. (생략)
- ② ~ ⑤ (생략)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  
-----  
-----  
-----

--. 다만, 제13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행매수 또는 전환사채권등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이하 “선행매수등”이라 한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여야 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  
-----  
----- 공개매수공고일(제133조의2제1항제1



<신 설>

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매수한 주식(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선행매수등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행매수등(제3호의 경우에는 공개매수의 철회를 말한다)을 한 다음날부터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행매수등을 한날로부터 15일 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3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3.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③ (생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제1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신설>

③ ~ ⑥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4. (생략)

<신설>

<신설>

-----  
----.

1. (현행과 같음)
2. -----  
-----  
-----  
-----  
----- 때(제13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공고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3. 제133조의2에 따른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  
-----  
-----.

1. ~ 14. (현행과 같음)
- 14의2. 제133조의2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매수등을 한 자
- 14의3. 제133조의2에 따라 의무공개매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p>15. ~ 29. (생략)</p> <p>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18의4. (생략)</p> <p>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u>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u> <u>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u></p> <p><u>&lt;신설&gt;</u></p> <p>20. ~ 48. (생략)</p>	<p>15. ~ 29. (현행과 같음)</p> <p>제445조(벌칙) ----- ----- ----- -----.</p> <p>1. ~ 18의4. (현행과 같음)</p> <p>19. ----- ----- <u>공개매수(의무공개매수를 제외한다)</u>----- -----</p> <p><u>19의2. 제134조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p>20. ~ 48. (현행과 같음)</p>
-------------------------------------------------------------------------------------------------------------------------------------------------------------------------------------------------------------------------------------------------	-----------------------------------------------------------------------------------------------------------------------------------------------------------------------------------------------------------------------------------------------------------------------